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43
------------	-------

발의연월일 : 2017. 5. .

발 의 자 : 서 종 수 위원 외 6인

## 1. 개정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여비 중 국내·외 숙박비가 물가 수준에 맞춰 현실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조정함.  
(안 제6조 별표 1 및 별표 2)

## 3. 예산조치 : 필요없음

## 4. 입법예고 : 2017.5.10. ~ 5.16.

##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 6. 개정조례(안) : 별첨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지급 기준액 구분	철도임	선박임	항공임	자동차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의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5,000

비고 : 1.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서울특별시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고속열차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제6조제2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준비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장 · 부의장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1등 정액		가등급 35 나등급 35 다등급 35 라등급 35	가등급 223 나등급 160 다등급 130 라등급 85	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	140	170	195
의원			2등 정액	실비액	가등급 30 나등급 30 다등급 30 라등급 30	가등급 176 나등급 137 다등급 106 라등급 81	가등급 81 나등급 59 다등급 44 라등급 37	130	155	180

-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4」 의 비고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
2.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으로 위 표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 개정되기 전 이라도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b>[별표 2]</b> <b>국내여비 지급기준표</b>  (단위: 원)							<b>[별표 2]</b> <b>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6조제1항 관련)</b>  (단위: 원)							
<b>지급 기준액 구분</b>							<b>지급 기준액 구분</b>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의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u>46,000</u>	25,000	의원	1등 금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u>70,000,</u> <u>광역시</u> <u>60,000,</u> <u>그 밖의</u> <u>지역은</u> <u>50,000)</u>							
비교 : 1. (생략)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 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내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국내여비 조 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비교 : 1. (현행과 같음)  2. 철도운임구분표 중 ----- 고속열차 -----, 해당 ----- ----- ----- ----- -----  3. 「공무원 여비 규정」 ----- -----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 ----- ----- 공무원 국내여비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u>국외여비 지급기준표</u>  (단위:미불화)				[별표 2]  <u>국외여비 지급기준표(제6조제2항 관련)</u>  (단위: 미 달러화(\$))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생략)</th><th>숙박비 (1야당)</th><th>(생략)</th></tr> </thead> <tbody> <tr> <td>의장 · 부의장</td><td>(생략)</td><td>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td><td>(생략)</td></tr> <tr> <td>의원</td><td>(생략)</td><td>가등급 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td><td>(생략)</td></tr> </tbody> </table>				구분	(생략)	숙박비 (1야당)	(생략)	의장 · 부의장	(생략)	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	(생략)	의원	(생략)	가등급 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	(생략)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현행과 같음)</th><th>숙박비 (1박당)</th><th>(현행과 같음)</th></tr> </thead> <tbody> <tr> <td>의장 · 부의장</td><td>(현행과 같음)</td><td>가등급 223 나등급 160 다등급 130 라등급 85</td><td>(현행과 같음)</td></tr> <tr> <td>의원</td><td>(현행과 같음)</td><td>가등급 176 나등급 137 다등급 106 라등급 81</td><td>(현행과 같음)</td></tr> </tbody> </table>				구분	(현행과 같음)	숙박비 (1박당)	(현행과 같음)	의장 · 부의장	(현행과 같음)	가등급 223 나등급 160 다등급 130 라등급 85	(현행과 같음)	의원	(현행과 같음)	가등급 176 나등급 137 다등급 106 라등급 81	(현행과 같음)
구분	(생략)	숙박비 (1야당)	(생략)																												
의장 · 부의장	(생략)	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	(생략)																												
의원	(생략)	가등급 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	(생략)																												
구분	(현행과 같음)	숙박비 (1박당)	(현행과 같음)																												
의장 · 부의장	(현행과 같음)	가등급 223 나등급 160 다등급 130 라등급 85	(현행과 같음)																												
의원	(현행과 같음)	가등급 176 나등급 137 다등급 106 라등급 81	(현행과 같음)																												
<p>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등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제1항관련(별표4)의 비교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p> <p>2.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외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이라도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비고 : 1. ----- 등급구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4」의 -----.</p> <p>2. 「공무원 여비 규정」 -----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 ----- ----- -----.</p>																											